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02.03.(수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2. 28.

나. 제 안 자 : 남궁형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 : 2020. 12. 29.

라. 상정일자 : 제26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(2021년 2월3일 상정・의결)

○ 제안설명 : 남궁형 의원

○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행정기관의 청사는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현재 청사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○ 따라서 시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기존 개방시설물인 잔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·조성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.(안 제4조)

○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1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○ (안 제4조) 개방 대상시설물 중 잔디 운동장 삭제

- 현행 제4조(대상시설물 및 용도)의 개방 대상시설물 중 제4호 잔디 운동장은 2019년 7월 청사주차장으로 변경·조성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임.

- 다만, 본 조항은 제10조(사용료)의 [별표]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별표의 잔디운동장 사용료를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th>수 정 안</th></tr>
<tr>
<td>【별표】
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
<table><tr><th>시 설 명</th><th>단위</th><th>기 본
사용료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2층 대회의실</td><td>1회/4시간</td><td>100,000원</td><td></td></tr><tr><td>1층 중앙홀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<tr><td>야외테니스장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<tr><td>잔디운동장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<tr><td>자료실, 어학실</td><td>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
<td>【별표】
(현행과 같음)</td>
<td>【별표】
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
<table><tr><th>시 설 명</th><th>단위</th><th>기 본
사용료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2층 대회의실</td><td>1회/4시간</td><td>100,000원</td><td></td></tr><tr><td>1층 중앙홀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<tr><td>야외테니스장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<tr><td>(삭제)</td><td>(삭제)</td><td>(삭제)</td><td></td></tr><tr><td>자료실, 어학실</td><td>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/table>

○ (안 제19조)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 예방을 위한 조문 신설

- 안 제19조(방역 등)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하고 특히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종사자와 민원인이 사용하는 시청사를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사전 및 사후 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제9조[1]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4조[2]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이 있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문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□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 따라 시청사 시설물의 방역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청사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안 제19조 제4호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 조치와 같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---

1) **「지방자치법」**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(생략)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2) **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** 제14조(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되,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 조광휘 위원 >

○ 제19조제4호를 보면 일시적 폐쇄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생각됨.

⇒ (행정국장) 코로나 발생에 따른 청사 폐쇄 계획을 수립하였음.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소산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 지를 정해놨음.

< 김국환 위원 >

○ 잔디구장의 주기적인 방역은 다를 것 같음.

⇒ (행정국장) 청사 연간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표 수정

○ [별표]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 표 중 “잔디운동장 부분” 삭제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❑ 붙임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[별표]를 아래와 같이 한다.

【별표】

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

시 설 명	단위	기 본 사용료	비 고
2층 대회의실	1회/4시간	100,000원	
1층 중앙홀	1회	무 료	
야외테니스장	1회	무 료	
자료실, 어학실		무 료	

[붙임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<table>
<tr><th>개 정 안(현행과 같음)</th><th>수 정 안</th></tr>
<tr><td>【별표】

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

<table>
<tr><th>시 설 명</th><th>단위</th><th>기 본
사용료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2층 대회의실</td><td>1회/4시간</td><td>100,000원</td><td></td></tr>
<tr><td>1층 중앙홀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야외테니스장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잔디운동장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료실, 어학실</td><td>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
</table></td><td>【별표】

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

<table>
<tr><th>시 설 명</th><th>단위</th><th>기 본
사용료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2층 대회의실</td><td>1회/4시간</td><td>100,000원</td><td></td></tr>
<tr><td>1층 중앙홀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야외테니스장</td><td>1회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
<tr><td>(삭제)</td><td>(삭제)</td><td>(삭제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료실, 어학실</td><td></td><td>무 료</td><td>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[붙임3]

인천광역시 조례 제　　호

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10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방역 등) 시장은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시청사의 청결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
2.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·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
3.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
4.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
5.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

시 설 명	단위	기 본 사용료	비 고
2층 대회의실	1회/4시간	100,000원	
1층 중앙홀	1회	무 료	
야외테니스장	1회	무 료	
자료실, 어학실		무 료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대상시설물 및 용도) 시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잔디 운동장 : 어린이대상 공놀이 등 5. (생 략) <신 설>	제4조(대상시설물 및 용도)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4. (현행 제5호와 같음) 제19조(방역 등) 시장은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시청사의 청결을 유지 ·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.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 ·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 · 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.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 4.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 5.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제19조 (생　략)	제20조 (현행 제19조와 같음)